



근로자 산재보상 혜택



산재보상은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비용을 지불합니다. 또한 손실된 임금에 대한 수당도 지급합니다.

업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1. 즉시 치료를 받으세요.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이 있음을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주세요.
2.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상을 당했는지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부상을 당한 후 30일 이내에 하세요.
3. 가능한 한 빨리 부상/질병에 관해 근로자 청구서 (**Employee Claim**, 양식 **C-3**)를 작성해서 Workers' Compensation Board(Board)에 제출하세요. 부상/질병 발생 후 2년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도 사고를 보고하지만 당사자가 보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전에 동일한 신체 부위를 다쳤거나 이와 유사한 부상을 당한 적이 있는 경우, 제한적 건강 정보 공개 (**Limited Release of Health Information**, 양식 C-3.3)도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서 제출

가장 빠른 방법: wcb.ny.gov를 방문하여, "File a Claim"을 클릭하고, **근로자 청구서(Employee Claim, 양식 C-3)** 웹버전을 작성해서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양식 C-3 작성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877) 632-4996에 전화하시면 Workers' Compensation Board 담당자가 도와 드립니다.

치료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NYS Occupational Health Clinic Network를 포함하여 Board에서 승인한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Board에서 승인한 의사, 개업 간호사, 의사 보조사 또는 심리치료사,

발병전문가, 카이로프랙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침술사 및 면허가 있는 임상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고용주의 보험회사(자가 보험인 경우 고용주)에 산재보상 치료를 위한 선호하는 제공자 조직(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 해당 PPO 네트워크에서 초기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보험회사에 또한 약국 또는 진단 테스트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 해당 네트워크 내에서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보험회사는 자체 필수 제공자 네트워크와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산재 보상 치료, 약물 또는 처방된 기기에 대해 본인 부담금 (Out-of-pocket)을 지불하지 마세요. 근로자가 청구를 하지 않거나, Board가 유효한 청구가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재보험회사가 이러한 청구서를 지불합니다. 그런 경우, 근로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또는 근로자의 일반 건강 보험회사에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Board 웹사이트(wcb.ny.gov)에서 승인받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에 우려사항이 있거나 승인받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Board 소속 의료 책임자 사무소(Medical Director's Office)에 (800) 781-2362로 연락하세요.

여행 및 기타 비용

치료나 독립적 건강 검진을 위해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마일리지, 대중 교통 또는 기타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Board 웹사이트에 있는 청구인의 의료 및 여행 경비 기록 및 환급 요청서(**Claimant's Record of Medical and Travel Expenses and Request for Reimbursement**, 양식 **C-257**)를 최소 6개월마다 작성해서 해당 비용에 대한 영수증과 함께 Board와 보험회사에 제출하세요.

손실된 임금에 대한 혜택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손실된 임금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7일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체의 일부가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경우.

부상으로 인해 전보다 더 적은 시간을 일하거나 업무가 바뀌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

청문회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혜택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청문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필요한 경우, Board는 청문회 개시 이유,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는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Board로부터 받은 모든 메일을 검토하시고 지시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을 위해 사본을 보관하세요.

근로자는 청구 시 언제라도 변호사 또는 면허가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이의제기 소지가 있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고 청구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Board가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결정하며, 이 수수료는 근로자의 손실된 임금 보상에서 차감됩니다.

본인의 청문회에 참석하셔서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법률 대리인에게 하시거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 판사에게 문의하세요. 온라인으로 가상 청문회에 참석하시거나 전화로 청문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청문회 통지서를 참조하세요.

청문회를 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Board에 연락하여 일정을 변경하세요.

청구에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때때로 보험회사가 청구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거나,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이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청구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Board는 청문회를 유보합니다. 산재보상법 판사가 근로자의 의료 기록, 임금, 기타 증빙 자료 및 증언을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 판사가 그 사안을 판단해서 모든 혜택 보상을 결정합니다.

근로자 또는 고용주의 보험회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Board 위원이 항소를 검토하며 이에 대한 동의, 변경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는 청문회를 더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청문회 기간 동안 근로자는 장애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 급여를 신청하시려면, Board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장애급여 청구 통지 및 증명(Notice and Proof of Claim for Disability Benefits, 양식 DB-450)을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는 Board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직접 Board 사무소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청구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된 경우, 장애 급여는 손실된 임금 보상에서 차감됩니다.

청구 일정

치료: 즉시 치료를 받으세요. 부상 후 15일 후에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근무손실일이 지속되는 경우 90일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세요.

임금 대체: 근로자가 장애를 가지고, 청구가 수락되고 7일 이상 결근한 경우, 사고 후 18일 이내 또는 보험회사에 통보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애 급여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청구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릴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청구에 이의제기된 날로부터 28일 후에 청문회 일정이 잡힙니다.

언어 지원

Board는 필요한 언어로 서류를 번역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청문회에서 근로자에게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번역이나 통역을 원하시면 (877) 632-4996으로 연락하세요. 가상 청문회를 하실 경우, 체크인 과정에서 통역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 제공

청구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Board 소속 부상 근로자 지원관(Advocate for Injured Workers)이 도움을 드립니다. 직장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치유되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대체 업무를 맡기거나 가벼운 업무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Board 소속 직업 재활 상담사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가족 간의 문제나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Board의 면허가 있는 마스터 사회복지사가 도와 드립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관해 알아보려면 Board에 전화하시거나 wcb.ny.gov/returntowork/를 방문하세요.

뉴욕주 Workers' Compensation Board는 혜택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법 준수를 장려함으로써 근로자와 고용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Workers' Compensation Boar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cb.ny.gov를 방문하세요.